

현 행	개 정 안	비고
<p>1. 서론</p> <p>1.1 이 규정은 ISO/IEC 17065를 기준으로 FoodPlus GmbH가 운영하는 「GLOBALG.A.P. IFA(농장종합보증, Integrated Farm Assurance, IFA)」(V5.2) 인증스킴에 대해 인증을 실시하는 제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기술한 것이다.</p>	<p>1. 서론</p> <p>1.1 -- 문서는 ----- ----- ----- ----- 한국인정기구로부터 공인제품인증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추가적인 기술요건이다.</p>	<p>o 자구 수정</p>
<p>1.2 이 규정은 KS Q ISO/IEC 17065, 한국인정기구(영문명칭은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이며, 약어로 "KOLAS"라 한다. 이하 "인정기구"라 한다)의 운영요령 및 GLOBALG.A.P.(이하 "글로벌갭"이라 한다)의 General Regulations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p>	<p>1.2 -- 문서는 ----- -----, ----- -----G.A.P.의 일반 규정 (General Regulations)과 -----.</p>	<p>o 자구 수정</p>
<p>2. 적용범위</p> <p>2.1 이 문서에서는 GLOBALG.A.P. IFA (V5.2) General Regulations에 따른 인정기구의 인증기관 인정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p>	<p><삭 제></p>	
<p>2.2 GLOBALG.A.P. IFA 인증스킴의 모든 부문 범위 및 제품 하위 범위에 대한 인정기구의 인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인증기관이 따라야 하는 규정 및 지침과 인증기관이 입증하여야 하는 심사/시험/검사 기준에 이 절차를 적용한다.</p>	<p><삭 제></p>	
<p>3. 인용문서</p> <p>3.1 KS Q ISO/IEC 17000:2017 Conformity Assessment – Vocabulary and general principles (적합성 평가 - 용</p>	<p>2. 인용문서</p> <p><삭 제></p>	<p>o 최신 국제기준을 반영, 조항번호 업데이트</p>

현행	개정안	비고
<p><u>어와 일반원칙)</u></p> <p>3.2 KS Q ISO/IEC 17065:2014 Conformity Assessment – Vocabulary and general principles (적합성 평가 - 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 인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p> <p>3.3 KOLAS-R-002 :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p> <p>3.4 KOLAS-R-003 :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p> <p>3.5 GLOBALG.A.P. IFA (V5.2) General Regulations Part I: <u>General Requirements</u></p> <p>3.6 GLOBALG.A.P. IFA (V5.2) General Regulations Part II: <u>Quality Management System Rules</u></p> <p>3.7 GLOBALG.A.P. IFA (V5.2) General Regulations Part III: <u>Certification Body and Accreditation Rules</u></p> <p>3.8 GLOBALG.A.P. IFA Control Points and Compliance <u>Criteria V5</u></p> <p>3.9 GLOBALG.A.P. Supporting Document (Scopes of ISO/IEC 17065 Accreditation for GLOBALG.A.P. Standards)</p>	<p>2.1 (현행과 같음)</p> <p>2.2 (현행과 같음)</p> <p>2.3 (현행과 같음)</p> <p>2.4 <u>GLOBALG.A.P. General Regulations - Rules for Certification Bodies</u></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2.5 (현행과 같음)</p>	
<p>4. 용어 정의</p> <p>4.1 이 문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에 규정된 관련</p>	<p>3. 용어 정의</p> <p>3.1 -----</p>	<p>o 최신 국제기준을 반영 (신규 용어의 정의</p>

현행	개정안	비고
<p>정의 또는 다음의 정의를 따른다. 다만, 이 문서에서 달리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표준화 및 관련활동-일반어휘(KS A ISO/IEC Guide 2), 적합성평가-용어 및 일반어휘(KS Q ISO/IEC 17000),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OLAS-R-002), GLOBALG.A.P. IFA (V5.2) General Regulations Part I Annex I.4: 용어정의를 적용된다.</p> <p>4.2 ~ 4.3 (생략)</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 -----, -----, -----, -----, -----, GLOBALG.A.P. General Regulations - Rules for Certification Bodies-----.</p> <p>3.2 ~ 3.7 (현행과 같음)</p> <p>3.8 "IFA V6 GFS"라 함은 GFSI(국제식품안전협회, Global Food Safety Initiatives) 인정(recognition)이 필요한 생산자를 위해 GFSI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된 IFA V6 버전을 의미한다. 과채류와 수산양식물만 적용된다.</p> <p>3.9 "IFA V6 SMART"라 함은 GFSI 인정(recognition)이 필요하지 않은 대부분은 생산자를 위한 IFA V6 버전을 의미한다.</p> <p>3.10 "Certification Body Administration Tool(CB-AT)"라 함은 심사원자격을 관리하는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도구를 말한다. GLOBALG.A.P. 위원회가 심사원 자격을 적절히 승인할 수 있도록, GLOBALG.A.P. 인증기관은 모든 심사원 및 각 심사원의 자격을 CB-AT에 등록해야 한다.</p> <p>3.11 "Audit Online Hub(AOH)" GLOBALG.A.P. 인증기관이 심사 정보를 취합하여 제출하는 IT 도구를 말한다. IFA V6(은)는 AOH 사용이 의무이다. 인증기관은</p>	<p>추가)</p>

현행	개정안	비고
<신설>	<p><u>GLOBALG.A.P. 인증서 생성 전, AOH를 통해 심사자료를 제공해야 한다.</u></p> <p>3.12 "<u>Validation Service</u>"라 함은 GLOBALG.A.P. 인증서를 발행하고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IT 도구를 말한다. IFA V6(은)는 GLOBALG.A.P. 데이터베이스(database) 대신, 유효성 서비스(Validation Service)를 통해 인증서를 발급한다.</p>	
<p>5. 인정 범위 - GLOBALG.A.P. IFA</p> <p>5.1 GLOBALG.A.P. IFA 인증스킴에 대한 인정범위는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OLAS-R-002)" <별표1>의 인정분야에 추가적으로 5.3항의 <u>글로벌 IFA 범위 및 5.2항의 옵션 범위를 적용한다.</u></p>	<p>4. 인정 범위 - GLOBALG.A.P. IFA</p> <p>4.1 ----- ----- ----- <u>4.2항의 GLOBALG.A.P. IFA 범위 및 4.3항</u>-----.</p>	<p>o 자구 수정, 조항 번호 업데이트</p>
<p>5.2 옵션 범위</p> <p>5.2.1 옵션 1</p> <p>(1) 개별생산자 인증 : 신청하는 단일생산지를 경작하는 생산자</p> <p>(2) <u>품질관리시스템 미적용 복수생산지 개별생산자 인증</u> : 복수생산지를 가진 개별 생산자 혹은 하나의 조직으로 <u>품질경영시스템(QMS) 적용하지 않는 생산자</u></p> <p>(3) <u>품질관리시스템 적용 복수생산지 개별생산자 인증</u> : 복수생산지를 가진 개별 생산자 혹은 하나의 조직으로 <u>품질경영시스템(QMS) 적용하는 생산자</u></p>	<p>4.3 옵션 범위</p> <p>4.3.1 옵션 1</p> <p>(1)) ----- : -----</p> <p>(2) <u>품질경영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QMS)</u> ----- : ----- ----- <u>QMS를</u> -----</p> <p>(3) <u>품질경영시스템</u> ----- : ----- ----- <u>QMS를</u> -----</p>	<p>o 자구 수정</p>
<p>5.2.2 옵션 2</p> <p>(1) <u>품질경영시스템(QMS)을 적용하여야 하는 법인 생산자 집단</u></p>	<p>4.3.2 옵션 2</p> <p>(1) <u>QMS를</u> -----</p>	
<p>5.3 GLOBALG.A.P. IFA 범위</p>	<p>4.2 GLOBALG.A.P. IFA 범위</p>	<p>o 최신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분류체계</p>

현행		개정안		비고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인정범위</th> </tr> <tr> <th>주범위(Scope)</th> <th>하위범위(sub-scope)</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농장일반 (All Farm Base)</td> <td>작물 (Crop base)</td> <td>(1) 과채류(Fruit and Vegetables) (2) 화훼류(Flowers and Ornamentals) (3) 작물 번식재(Plant Propagation Material) (4) 곡물(Combinable Crops) (5) 차(Tea) (6) 홉(Hops)</td> </tr> <tr> <td>축산 (Livestock base)</td> <td>(1) 낙농업(Dairy) (2) 소와 양(Cattle and Sheep) (3) 송아지(Calf and Young Beef) (4) 돼지(Pigs) (5) 가금류(Poultry) (6) 칠면조(Turkey)</td> </tr> <tr> <td>수산양식 (Aquaculture base)</td> <td>-</td> <td></td> </tr> </tbody> </table>		인정범위		주범위(Scope)	하위범위(sub-scope)	농장일반 (All Farm Base)	작물 (Crop base)	(1) 과채류(Fruit and Vegetables) (2) 화훼류(Flowers and Ornamentals) (3) 작물 번식재(Plant Propagation Material) (4) 곡물(Combinable Crops) (5) 차(Tea) (6) 홉(Hops)	축산 (Livestock base)	(1) 낙농업(Dairy) (2) 소와 양(Cattle and Sheep) (3) 송아지(Calf and Young Beef) (4) 돼지(Pigs) (5) 가금류(Poultry) (6) 칠면조(Turkey)	수산양식 (Aquaculture base)	-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범위(Scope)</th> <th>제품군(Product Categories)</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작물 (Plants)</td> <td>스마트 (Smart)</td> <td>· 과채류(Fruit and Vegetables) · 화훼류(Flowers and Ornamentals) · 홉(Hops)</td> </tr> <tr> <td>국제식품안전 (GFS)</td> <td>· 과채류(Fruit and Vegetables)</td> </tr> <tr> <td>수산 양식물 (Aquaculture)</td> <td>스마트 (Smart), 국제식품안전 (GFS)</td> <td>· 어류(Finfish) · 갑각류(Crustaceans) · 연체류(Molluscs) · 해조류(Seaweed)</td> </tr> </tbody> </table>		범위(Scope)		제품군(Product Categories)	작물 (Plants)	스마트 (Smart)	· 과채류(Fruit and Vegetables) · 화훼류(Flowers and Ornamentals) · 홉(Hops)	국제식품안전 (GFS)	· 과채류(Fruit and Vegetables)	수산 양식물 (Aquaculture)	스마트 (Smart), 국제식품안전 (GFS)	· 어류(Finfish) · 갑각류(Crustaceans) · 연체류(Molluscs) · 해조류(Seaweed)	<p>개편 (범위(scope) 세분화, 인증대상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일부 제품군은 제외)</p>
인정범위																											
주범위(Scope)	하위범위(sub-scope)																										
농장일반 (All Farm Base)	작물 (Crop base)	(1) 과채류(Fruit and Vegetables) (2) 화훼류(Flowers and Ornamentals) (3) 작물 번식재(Plant Propagation Material) (4) 곡물(Combinable Crops) (5) 차(Tea) (6) 홉(Hops)																									
	축산 (Livestock base)	(1) 낙농업(Dairy) (2) 소와 양(Cattle and Sheep) (3) 송아지(Calf and Young Beef) (4) 돼지(Pigs) (5) 가금류(Poultry) (6) 칠면조(Turkey)																									
수산양식 (Aquaculture base)	-																										
범위(Scope)		제품군(Product Categories)																									
작물 (Plants)	스마트 (Smart)	· 과채류(Fruit and Vegetables) · 화훼류(Flowers and Ornamentals) · 홉(Hops)																									
	국제식품안전 (GFS)	· 과채류(Fruit and Vegetables)																									
수산 양식물 (Aquaculture)	스마트 (Smart), 국제식품안전 (GFS)	· 어류(Finfish) · 갑각류(Crustaceans) · 연체류(Molluscs) · 해조류(Seaweed)																									
<p>6. GLOBALG.A.P. IFA 인증스킵 인정을 위한 인정기구 운영사항</p> <p>6.1 (생략)</p> <p>6.2 인정기구는 GLOBALG.A.P. IFA 범위(농산물, 축산물, 수산양식)에 대한 최초 평가 시, 신청기관이 신청한 각 하위범위에 대해 최소 1번의 현장입회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p> <p>6.3 인정기구는 신청기관의 신청범위에 관계없이 품질경영시스템 심사 입회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만 옵션 2(옵션 1 품질경영시스템 적용 복수생산지 생산자 인증 포함)에 대해 인정할 수 있다. * 예시: 신청기관이 QMS 적용 수산양식(AQ)과 과채류(FV)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인정기구는 과채류 QMS 심사에 대해서만 입회평가를 실시한 후, 두 개 범위에 모두 옵션 2에 대한 인정을 할 수 있다.</p>		<p>5. 인정기구 운영사항</p> <p>5.1 (현행과 같음)</p> <p>5.2 -----(농산물, 수산 양식물) -----, ----- 범위-----</p> <p>5.3 ----- ----- QMS ----- 개별생산자 ----- ----- * 예시: -----, ----- -----, ----- ----- 대해 옵션 2 및 QMS 적용 복수생산지 개별생산자 인증을 인정-----.</p>		<p>o 조항번호 업데이트</p> <p>o 최신 국제기준 반영 (일부 인증대상 제외)</p> <p>o 자구 수정 및 인정기준 명확화</p>																							

현행	개정안	비고
<p>6.4 인증기관이 인정받은 주범위의 하위범위 확대 신청을 한 경우, 인정기구는 별도의 현장입회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나, 확대 범위와 관련된 인원 역량에 대한 평가는 실시하여야 한다.</p>	<p>5.4 범위의 제품군에 대해</p>	<p>o 자구 수정</p>
<p>6.5 인정기구는 최대 4년에 1회 인증기관의 모든 하위범위에 대한 현장입회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입회평가는 인증기관의 옵션 2 또는 품질경영시스템 적용하는 복수생산지 옵션1 인증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현장입회평가의 빈도가 증가하는 경우, 인정기구는 이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p>	<p>5.5 4년 주기로 인증기관의 모든 범위에 QMS를 고려해야 하며, QMS를 적용한 복수생산지 개별생산자 인증/법인 생산자 단체를</p>	<p>o 자구 수정</p>
<p>6.6 인정기구는 글로벌웹 Extranet을 통해 인정기구와 관련된 불만관리시스템 및 인증기관에 대한 무결성 프로그램 기록을 매년 검토하고, 가능한 경우, 이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정기구는 글로벌웹 사무국에서 실시하는 무결성 프로그램의 평가에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글로벌웹 사무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p>	<p>5.6 할 수 있고, 인증기관의 차기 인정</p>	<p>o 자구 수정</p>
<p>6.7 인정기구는 글로벌웹 사무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인증기관 인정평가 보고서와 가장 최근의 인정 평가에 대한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에게 이에 대한 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p>	<p>5.7 할 수 있다.</p>	<p>o 자구 수정</p>
<p>6.8 인정서</p> <p>6.8.1 인정기구의 장이 인증기관에 발행하는 인정서는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p> <p>(1) 인정분야 및 범위</p> <p>(2) GLOBALG.A.P. IFA 기준 문서와 버전</p> <p>(3) 해당되는 경우, 옵션 1에 대한 제한사항</p> <p>(4) 해당되는 경우, 지역적인 제한사항</p>	<p>5.8 인정서</p> <p>5.8.1</p> <p>(1) 범위 및 제품군 포함</p> <p>(2) 일반규정 및 P&Cs (버전포함)</p> <p>(3) 인증지역범위 및/또는 옵션</p> <p><삭제></p>	<p>o 최신 국제기준을 반영 (인정서 상 제공하는 정보 보완)</p>

현행	개정안	비고
<p>6.8.2 인정서의 인정분야 및 범위 양식은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KOLAS-R-003)"의 별지 제9호 서식을 따른다. 이때, 중분류는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KOLAS-R-002)" <별표1>의 인정분야 및 본 문서의 5.3항의 주범위를 적용하고, 제품명은 5.3항의 하위범위를 적용한다. 제품의 범주는 GLOBALG.A.P. Supporting Document (Scopes of ISO/IEC 17065 Accreditation for GLOBALG.A.P. Standards) 하위범위의 제품목록을 적용한다.</p>	<p>5.8.2 ----- ----- -----, -----, <u>인정분야 및 범위는</u> ----- ----- 및 본 문서의 5.2항(범위, 제품군)을 적용한다.</p>	<p>o 자구 수정 및 조항번호 업데이트</p>
<p>7. 인정기준</p> <p>7.1 GLOBALG.A.P. IFA <u>인증스킴의 인정에 대한 기준</u>은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OLAS-R-002)"에 따르며, 추가적으로 GLOBAL G.A.P. IFA General Regulations Part III(인증기관 및 인정 규칙) 3 ~ 6항에 명시된 다음의 인증기관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GLOBALG.A.P. IFA General Regulations Part III 인증기관 및 인정 규칙</p> <p>3. 운영요구사항(Operational Requirements)</p> <p>3.1 일반요구사항</p> <p>3.2 인증기관 직원의 교육 및 자격</p> <p>3.3 GLOBALG.A.P.과의 인증 관련 정보 교환</p> <p>3.4 인증기관의 독립성, 공정성, 기밀유지, 무결성</p> </div>	<p>6. 인정기준</p> <p>6.1 ----- <u>인증스킴을 운영하는 인증기관</u>----- ----- -----, ----- <u>General Regulations - Rules for Certification bodies(인증기관규칙) 5항부터 9항까지 및 11항부터 14항까지</u> ----- 준수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V6 인증기관 규칙</p> <p>5. 운영요구사항(Operational Requirements)</p> <p>5.1 -----</p> <p>5.2 -----</p> <p>5.3 ----- <u>및 준수</u> -----</p> <p>5.4 -----</p> </div>	<p>o 자구 수정, 조항번호 업데이트 및 최신 국제기준을 반영</p>

현행	개정안	비고
<p>4. 생산자 등록 및 수락(Producer Registration and Acceptance) <u>4.1 일반요구사항</u> <u>4.2 생산자의 등록</u></p> <p>5. 심사 프로세스(Assessment Process) <u>5.1 옵션 1 생산자</u> <u>5.2 정기검사(Announced Inspections)</u> <u>5.3 사후관리 보상 프로그램(Unannounced Reward Program)</u> <u>5.4 옵션 2 생산자단체 및 옵션 1 품질경영시스템 적용 복수생산지 생산자</u> <u>5.5 사후관리 검사 및 심사(Unannounced Inspections and Audits)</u> <u>5.6 취급시설 검사(Inspections of Product Handling Units)</u></p> <p>6. 인증 프로세스(Certification Process) <u>6.1 일반요구사항</u></p> <p><u>6.2 심사 기간</u></p> <p><u>6.3 생산자 부적격 및 제재(Producer Non-conformance and Sanctions)</u> <u>6.4 인증서 발행 요구사항(Paper Certificate Requirements)</u></p>	<p>6. 생산자 등록 (Producer Registration) <u>6.1 -----</u> <u>6.2 ----자 -----</u></p> <p>7. 심사 프로세스(Audit Process) <u>7.1 심사 범위(Audit scope)</u> <u>7.2 QMS 미적용 옵션 1 개별생산자</u> <u>7.3 QMS 적용 옵션 1 개별생산자 및 옵션 2 생산자 단체</u> <u>7.4 불고지심사(Unannounced CB Audit)</u> <u>7.5 동등성 스킴 심사/체크리스트(CB Audits for benchmarked schemes/checklists)</u> <u>7.6 인증기관 서류심사(옵션 1 또는 옵션 2)를 위한 ICT 활용 (IAF MD4:2018 기반)</u> <u>7.7 GLOBALG.A.P. 원격심사 (IFA V6 GFS, HPSS 및 PHA 는 해당없음)</u></p> <p>8. 인증 프로세스(Certification Process) <u>8.1 -----</u></p> <p><삭제></p> <p><u>8.2 -----</u> <u>8.3 ---서 요-----</u></p>	

현행	개정안	비고
<p><신설></p>	<p>8.4 <u>인증서 유효기간 연장(Certificate validity extension)</u></p> <p>9. 인증업체의 인증기관 이동(Transfer Between CBs)</p> <p>9.1 <u>일반요구사항</u></p> <p>9.2 <u>인증서 유효기간 연장 후, 인증기관 이동(Transfer during certificate validity extention)</u></p> <p>11. 인증무결성 프로그램(Certification Integrity Program)</p> <p>11.1 <u>심사결과의 평가 및 분류</u></p> <p>12. GLOBALG.A.P. 인증기관 농장심사원 자격</p> <p>13. GLOBALG.A.P. 인증기관 QMS 심사원 자격</p> <p>14. IFA V6 GFS를 위한 추가 요구사항</p> <p>14.1 <u>추가 요구사항</u></p> <p>14.2 <u>대체 요구사항</u></p>	
<p>8. 인정신청</p>	<p>7. 인정신청</p>	<p>o 조항번호 업데이트</p>
<p>8.1 (생략)</p>	<p>7.1 (현행과 같음)</p>	
<p>8.1.1 (생략)</p>	<p>7.1.1 (현행과 같음)</p>	<p>o 조항번호 업데이트</p>
<p>8.1.2 (생략)</p>	<p>7.1.2 (현행과 같음)</p>	<p>o 조항번호 업데이트</p>
<p>8.1.3 (생략)</p>	<p>7.1.3 (현행과 같음)</p>	<p>o 조항번호 업데이트</p>
<p>8.1.4 인정기구의 인정과 연계된 GLOBALG.A.P. 인증기관 승인 단계에 대한 절차는 GLOBALG.A.P. IFA General Regulations Part III 2항(인증기관 승인 절차)에 명시</p>	<p>7.1.4 ----- -----General Regulations Rules for Certification Bodies 4항-----</p>	<p>o 최신 국제기준 문서를 적용토록 규정</p>

현행	개정안	비고
된 절차를 따른다.	-----.	
8.1.5 (생략)	7.1.5 (현행과 같음)	○ 조항번호 업데이트
9. 평가반 구성	8. 평가반 구성	○ 조항번호 업데이트
9.1 (생략)	8.1 (현행과 같음)	
10. 평가일수의 산정	9. 평가일수의 산정	○ 조항번호 업데이트
10.1 (생략)	9.1 (현행과 같음)	
10.1.1 QMS 적용(옵션 1 또는 옵션 2) 범위에 대한 입회평가 (1) QMS 심사 (2) 샘플생산자 검사 (3) 생산자 보고서 작성 (4) 이동시간	9.1.1 ----- (1) ----- (2) ----- 심-- (3) ----- (4) -----	○ 자구 수정
10.1.2 옵션 1 생산자 범위(QMS 미적용) 입회평가 (1) 생산자 검사 (2) 보고서 작성 (3) 이동시간	9.1.2 ----- (1) ----- 심-- (2) ----- (3) -----	○ 자구 수정
11. 인증기관의 인증표본 및 소재지 표본 추출	10. 인증기관의 인증표본 및 소재지 표본 추출	○ 조항번호 업데이트
11.1 (생략)	10.1 (현행과 같음)	
12. 평가업무절차	11. 평가업무절차	○ 조항번호 업데이트
12.1 ~ 12.4 (생략)	11.1 ~ 11.4 (현행과 같음)	
12.5 현장입회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사는 인증기관의 심사원이 GLOBAL G.A.P. IFA General Regulation에 따라 심사를 수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심사 범위에 해당하는 GLOBALG.A.P. CPCC(Control Points and Compliance	11.5 -----, ----- ----- ----- ----- P&C(Principles and Criteria)	○ 최신 국제기준 문서를 적용토록 규정

현행	개정안	비고
Criteria)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13. 평가보고서 13.1 (생략)	12. 평가보고서 12.1 (현행과 같음)	○ 조항번호 업데이트
14. 시정조치 보고 및 확인평가 14.1 (생략)	13. 시정조치 보고 및 확인평가 13.1 (현행과 같음)	○ 조항번호 업데이트
15. 재검토기한 (생략)	14. 재검토기한 (현행과 같음)	○ 조항번호 업데이트
[별지 제1호 서식]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GLOBALG.A.P. IFA 인증기관 인정신청 확인서 (CONFIRMATION OF APPLICATION FOR ACCREDITATION) </div> 기관명 : (Name of Certification Body) 법인등록번호 : (Registration Number of Corporation) 법인주소 : (Address of Corporation) 사업장 소재지 : (Address of Certification Office) 인정신청분야 및 범위 : (Application Scope of Accreditation) 기준문서 : (Normative Documents)	[별지 제1호 서식]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현행과 같음) </div> ----- : (Name of Applicant (Certification Body)) ----- : (Corporation Registration Number) ----- : (-----) ----- : (-----) ----- : (-----) ----- : (-----)	○ 자구 수정

현행	개정안	비고																																													
<p>상기 기관이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라 한국인정기구의 KS Q ISO/IEC 17065 인정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인정기구장</p>	<p>-----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KS Q ISO/IEC 17065에 의거하여 KOLAS 공인제품인증기관으로 ----- -----.</p> <p>(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LAS) confirms the applicant has applied for KOLAS accredited product certification body under Conformity Assessment Management Act. Article 8 and KS Q ISO/IEC 17065.)</p> <p style="text-align: right;">-- -- --</p> <p style="text-align: center;">-----</p>																																														
<p>[별지 제2호 서식]</p> <p>GLOBALG.A.P. IFA 추가기술요건 평가 점검표</p> <p>기관명 : 평가구분 및 평가일자 : 신규/확대/변경/정기검사 (00.00.00~00.00.00)</p> <table border="1" data-bbox="168 957 981 1380"> <thead> <tr> <th rowspan="2">평가항목</th> <th colspan="3">평가결과</th> </tr> <tr> <th>적합</th> <th>부적합</th> <th>해당없음</th> </tr> </thead> <tbody> <tr> <td>GLOBALG.A.P. IFA General Regulation Part III</td> <td>KS Q ISO/IEC 17065</td> <td></td> <td></td> </tr> <tr> <td>3.2 직원의 교육 및 자격 a)항 - 스킴관리자(인증책임자)의 적격성</td> <td rowspan="3">6.1 인증기관 인원</td> <td></td> <td></td> </tr> <tr> <td>•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td> <td></td> <td></td> </tr> <tr> <td>• 승인된 하나 이상의 하위범위에 대한 검사원(inspector)자격 취득</td> <td></td> <td></td> </tr> </tbody> </table>	평가항목	평가결과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GLOBALG.A.P. IFA General Regulation Part III	KS Q ISO/IEC 17065			3.2 직원의 교육 및 자격 a)항 - 스킴관리자(인증책임자)의 적격성	6.1 인증기관 인원			•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			• 승인된 하나 이상의 하위범위에 대한 검사원(inspector)자격 취득			<p>[별지 제2호 서식]</p> <p>-----</p> <p>----- :</p> <p>----- :</p> <table border="1" data-bbox="1012 957 1803 1380"> <thead> <tr> <th colspan="2">평가항목</th> <th colspan="3">평가결과</th> </tr> <tr> <th>KS Q ISO/IEC 17065</th> <th>GLOBALG.A.P. General Regulations - Rules for Certification bodies*</th> <th>적합</th> <th>부적합</th> <th>해당없음</th> </tr> </thead> <tbody> <tr> <td>4.2 공평성 관리 4.5 기밀유지</td> <td>5.4 인증기관 독립성, 공평성, 기밀유지, 무결성 o 인증기관의 운영 및 인증활동의 독립성 및 공평성 절차 운영 o 기밀유지에 관한 절차 운영 o 심사원이 연속으로 4년을 초과하여 한 업체를 심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절차 운영</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6.1 인증기관 인원</td> <td>5.2 a) 스킴관리자 o 정규직, 농장심사원 자격</td> <td></td> <td></td> <td></td> </tr> <tr> <td>5.2 b) 내부감사</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평가항목		평가결과			KS Q ISO/IEC 17065	GLOBALG.A.P. General Regulations - Rules for Certification bodies*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4.2 공평성 관리 4.5 기밀유지	5.4 인증기관 독립성, 공평성, 기밀유지, 무결성 o 인증기관의 운영 및 인증활동의 독립성 및 공평성 절차 운영 o 기밀유지에 관한 절차 운영 o 심사원이 연속으로 4년을 초과하여 한 업체를 심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절차 운영				6.1 인증기관 인원	5.2 a) 스킴관리자 o 정규직, 농장심사원 자격				5.2 b) 내부감사				<p>o 자구 및 표 형식 수정, 최신 국제기준에 따른 평가항목 반영 (6항(인증기준)과 연계된 내용으로, 평가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세부기준을 평가표에 명시)</p>
평가항목		평가결과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GLOBALG.A.P. IFA General Regulation Part III	KS Q ISO/IEC 17065																																														
3.2 직원의 교육 및 자격 a)항 - 스킴관리자(인증책임자)의 적격성	6.1 인증기관 인원																																														
•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																																															
• 승인된 하나 이상의 하위범위에 대한 검사원(inspector)자격 취득																																															
평가항목		평가결과																																													
KS Q ISO/IEC 17065	GLOBALG.A.P. General Regulations - Rules for Certification bodies*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4.2 공평성 관리 4.5 기밀유지	5.4 인증기관 독립성, 공평성, 기밀유지, 무결성 o 인증기관의 운영 및 인증활동의 독립성 및 공평성 절차 운영 o 기밀유지에 관한 절차 운영 o 심사원이 연속으로 4년을 초과하여 한 업체를 심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절차 운영																																														
6.1 인증기관 인원	5.2 a) 스킴관리자 o 정규직, 농장심사원 자격																																														
	5.2 b) 내부감사																																														

현행				개정안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직일 것 • GLOBALG.A.P. 업무의 책임 <p>(GLOBALG.A.P. 사무국 요구사항 대응 및 GLOBALG.A.P. 제공사항/소식 공유 담당업무 포함)</p>				<p>6.2 평가를 위한 자원</p>	<p>IFA V6 SMART (*별표 1 참조)</p>	<p>12. 농장심사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 및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 학력, 경력 ○ 필수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심사원 교육 - 식품안전 8시간 - 위생교육 8시간 - GLOBALG.A.P. P&C 온라인교육 - 농약, 토양관리, 비료 및 IPM 교육 ○ 인증기관의 심사원 후보자에 대한 업무수행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1회 참관 - 최소 1회 입회평가 ○ 심사원 역량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4년 1회 입회평가 - 연간 최소 5건 농장 심사 			
<p>3.2 직원의 교육 및 자격 b)항, 부속서 III.1, 2</p> <p>- 검사원(Inspector) 및 심사원(Auditor)의 자격요건 [별표 1 참조]</p> <p>1) 학력 및 경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 학력, 경력) <p>2) 필수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원/선임심사원 교육, 식품안전, 위생, GLOBALG.A.P 교육 이수 <p>3) 인증기관의 검사원/심사원 신청자에 대한 작업수행도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관, 입회심사 등 <p>4) 검사원/심사원 역량 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심사수행, 입회심사 등 	<p>6.2 평가를 위한 자원</p>					<p>13. QMS심사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 및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 학력, 경력 - 최소 10일 QMS 심사경력 ○ 필수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37시간 ISO선임심사원 시험 합격 - 1일 심사원 교육 - 식품안전 8시간 - 위생교육 8시간 - GLOBALG.A.P. P&C 및 QMS 온라인교육 - 농약, 토양관리, 비료 및 IPM 교육 ○ 인증기관의 심사원 후보자에 대한 업무수행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1회 참관 - 최소 1회 QMS 입회평가 ○ 심사원 역량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4년 1회 입회평가 - 연간 최소 5건 QMS 심사 			
<p>3.4 인증기관의 독립성, 공정성, 기밀유지, 무결성</p>	<p>4.2 공정성</p>					<p>IFA V6 GFS (*별표 1</p>	<p>12. 농장심사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FA V6 SMART 자격요구사항 적용 ○ 최소 3건의 농장심사기술평가 실 		

현행				개정안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의 운영 및 인증활동의 독립성 및 공정성 절차 운영 - 기밀유지에 관한 절차 운영 - 검사원/심사원이 4년 연속으로 한 업체를 검사/심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절차 운영 	관리					참조)	시 / 1건은 입회평가 대체가능			
	4.5 기밀유지						13. QMS심사원			
	7.1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IFA V6 SMART 자격요구사항 적용 o 최소 3건의 QMS심사기술평가 실시 / 1건은 입회평가 대체가능 			
4. 생산자 등록 및 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생산자의 정보에 대한 GLOBALG.A.P. 데이터베이스 등록, 업데이트, 수수료 공지 등 절차 보유 	7.2 신청					7.2 신청 7.3 신청검토	6. 생산자 등록			
	7.3 신청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신청 생산자의 정보에 대한 GLOBALG.A.P. 데이터베이스 등록, 업데이트, 수수료 공지 등 절차 보유 및 이행 적절성 o 인증신청서에는 'GLOBALG.A.P. Registration Data Requirements'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반영 적절성 			
	7.4 평가						7. 심사프로세스			
5. 심사 프로세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옵션 1, 2에 대한 정기심사, 사후관리 심사 절차 보유 및 운영 	7.4 평가					7.4 평가	7.2 QMS 미적용 옵션 1 및 "GLOBALG.A.P. General Regulation - Rules for individual producers"를 적용한 절차 보유 및 이행 적절성			
	7.9 사후관리						7.3 QMS 적용 옵션 1 / 옵션 2 및 "GLOBALG.A.P. General Regulation - Rules for producer groups and multisite producers with QMS"를 적용한 절차 보유 및 이행 적절성			
	7.5 검토						IFA V6 SMART 절차 및 '14. IFA V6 GFS 추가요구사항' 절차 보유 및 이행 적절성			
6. 인증프로세스 6.1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결정권자, 인증위원회 중 1인 이상 심사원 자격(IFA GR Part III의 부속서 III.2) 충족 여부 	7.6 인증 의					7.5 검토 7.6 인증 의 사결정	7.6 인증기관 서류심사(옵션 1 또는 옵션 2)를 위한 ICT 활용 절차 보유 및 이행 적절성 (해당시)			
	7.7 인증문서						7.7 원격심사 절차 보유 및 이행 적절성 (해당시)			
	7.5 검토						8. 인증프로세스 절차 보유 및 이행 적절성			
						7.5 검토 7.6 인증 의 사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인증결정위원회의 자격 충족여부 - 옵션 1 : 최소 농장심사원 자격 + 13.3.1의 a)의 QMS 심사원 자격 			

현행				개정안				비고	
<p>-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미준수 사항 식별 (CPCC에 대한 부적합/부적합(GLOBALG.A.P. Certification Rule에 대한 부적합)사항 식별</p> <p>- 인증기관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할 항목</p> <p>- 심사체크리스트의 이용여부</p>				7.7 인증문서	IFA V6 SMART/GFS	<p>- 옵션 2 : 최소 QMS심사원 자격</p> <p>o 인증신청서 등 인증 관련 서류 확인</p> <p>o 심사체크리스트 작성여부</p> <p>o 필수 100%, 준필수 95% 이상 충족</p> <p>o 부적합 시정조치 완료 여부</p>			
<p>6.2 심사기간</p> <p>- 심사보고서에 심사 기간에 대한 기록 포함</p> <p>- 각 범위별 충분한 심사를 위한 최소 심사 기간 설정</p>	7.11 인증의 완료	축소	정지 또는 취소	7.9 사후관리	IFA V6 SMART	<p>5.3 인증 및 준수 정보 교환</p> <p>o GLOBALG.A.P. IT 시스템을 통한 인증정보 관리절차 보유 및 이행 적절성</p> <p>8.3 인증서 요구사항</p> <p>o 최신 인증서 양식 사용여부</p> <p>o 인증과 관련된 생산자, 생산지 및 취급시설 정보 제공여부</p> <p>o GLOBALG.A.P. IT 시스템 활용절차 보유 및 이행 적절성</p>			
<p>6.3 제품 부적합 및 처분</p> <p>- 부적합사항에 대한 제재(경고/정지/취소) 및 시정조치 평가에 따른 해제</p>				7.10 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IFA V6 SMART/GFS	<p>7. 심사프로세스</p> <p>7.3 QMS 적용 옵션 1 / 옵션 2 및 "GLOBALG.A.P. General Regulation -Rules for producer groups and multisite producers with QMS"를 적용한 절차 보유 및 이행 적절성</p> <p>7.4 불고지심사에 대한 절차 보유 및 이행 적절성</p>			
<p>6.4 인증서 발행 요구사항</p> <p>- GLOBALG.A.P. 최신 인증서 양식 사용여부</p> <p>- 인증과 관련된 생산자, 생산지 및 취급시설 정</p>	7.7 인증문서			IFA V6 GFS	IFA V6 SMART/GFS	<p>IFA V6 SMART 절차 및 '14. IFA V6 GFS 추가요구사항' 절차 보유 및 이행 적절성</p> <p>8.4 인증기간연장 절차 보유 및 이행 적절성</p> <p>o 추가심사 후, 품목/인원/면적 추가</p>			
				IFA V6 SMART		<p>7. 심사프로세스</p> <p>7.2 QMS 미적용 옵션 1 및 "GLOBALG.A.P. General Regulation - Rules for individual products"를 적용한 절차 보유 및 이행 적절성</p> <p>7.3 QMS 적용 옵션 1 및 옵션 2 및 "GLOBALG.A.P. General Regulation</p>			

현행	개정안				비고
<p>보 제공여부</p> <p>9. 무결성 프로그램</p> <p>- 해당되는 경우, GLOBALG.A.P. 무결성 프로그램 (GLOBALG.A.P. 자체 평가프로그램)에서 확인된 인증기관의 부적합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 및 적절성</p>			<p>-Rules for producer groups and multisite producers with QMS"를 적용한 절차 보유</p> <p>9.2 인증서 유효기간 연장 후, 인증기관 이동 관련 절차 보유 및 이행 적절성</p> <p>IFA V6 GFS</p> <p>o 추가심사 없는 인원/면적 추가(옵션 2)</p> <p>GLOBALG.A.P. General Regulation - Rules for producer groups and multisite producers with QMS의 4.9항 관련 절차 보유</p>		
<p><신설></p> <p>[별표 1]</p> <p><u>글로벌갭 인증검사원(Inspector)/심사원(Auditor) 자격요건</u></p>	<p>8.7 시정조치</p>	<p>7.11 인증의 만료 축소 정지 또는 취소</p> <p>8.2 생산자 부적격 및 제재</p> <p>o 부적합사항에 대한 제재(경고/정지/취소) 및 시정조치 평가에 따른 해제</p>	<p>7.2 QMS 미적용 옵션 1 및 "GLOBALG.A.P. General Regulation -Rules for individual products"를 적용한 절차 보유 및 이행 적절성</p> <p>7.3 QMS 적용 옵션 1 / 옵션 2 및 "GLOBALG.A.P. General Regulation - Rules for producer groups and multisite producers with QMS"를 적용한 절차 보유 및 이행 적절성</p> <p>11. 인증무결성프로그램 (CIPRO) 평가에서 확인된 인증기관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절차 보유 및 이행 적절성</p>	<p>* 별도 구분이 없는 경우, SMART 및 GFS에 해당된다.</p>	<p>o 최신 국제기준을 반영 (심사원 분류 체계, 기준문서 최신화)</p>
			<p>GLOBALG.A.P. IFA SMART/GFS 농장심사원(Farm Auditor)/QMS 심사원(QMS Auditor) 자격요건</p>		

현행	개정안	비고
<p>글로벌갭 인증심사원은 <u>검사원(Inspector) 및 심사원(Auditor)</u>로 구분되며, 각각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OLAS-R-002)" [별표5] 인증기관 직원의 자격기준에 추가적으로 GLOBALG.A.P. IFA General Regulation III 부속서 1,2에 따른 다음 요건들을 만족하여야 한다.</p>	<p>GLOBALG.A.P. ----- IFA V6 SMART/GFS 각 스킴별 농장 심사원(Farm Auditor) 및 QMS 심사원(QMS Auditor)-----, ----- ----- IFA V6 SMART의 경우, GLOBALG.A.P. General Regulations - Rules for Certification Bodies 12, 13항 요구사항들을 만족하여야 하며, IFA V6 GFS의 경우, 추가로 동 규칙 14항-----.</p>	
<p><신설></p> <p>1. <u>검사원(Inspector)/심사원(Auditor)의 업무범위</u></p> <p>1.1 <u>검사원은 옵션 1 생산자의 GLOBALG.A.P. CPCC 준수 여부를 검사하며, 품질경영시스템 심사는 제외한다.</u></p> <p>1.2 <u>심사원은 옵션 1 생산자 및 옵션 2 생산자단체의 GLOBALG.A.P. CPCC 준수에 대한 검사와 품질경영시스템을 심사한다.</u></p>	<p>1. IFA V6 SMART/GFS 공통</p> <p>가. <u>농장심사원(Farm Auditor)/ QMS심사원(QMS Auditor)</u>-----</p> <p>1) <u>농장심사원</u>----- P&C ----- ----- 심-----, -----.</p> <p>2) <u>QMS심사원</u>----- ----- P&C ----- -----.</p>	<p>o 최신 국제기준을 반영 (심사원 분류 체계, 기준문서 최신화)</p>
<p>2. <u>학력 및 경력</u></p> <p><u>검사원 및 심사원의 학력 및 경력은 다음의 1), 2) 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한다.</u></p> <p>2.1 <u>해당되는 인증범위(농작물/축산물/수산양식물)와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및 최소 3년의 농업분야(가족농업 가능) 경력 보유</u></p> <p>2.2 <u>식품관련 분야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및 해당되는 인증범위(농작물/축산물/수산양식물)의 농장 및 현장 실무직 또는 기술분야 생산관리직으로 최소 4년의 경력 보유</u></p>	<p>나. <u>학력 및 경력</u></p> <p><u>농장심사원 및 QMS 심사원</u>----- -----.</p> <p>1) -----(<u>물 및/또는 수</u>)----- ----- ----- (<u>또는 최소 2년 과정의 동등 수준의 교육</u>) <u>및 전문학사 졸업 후, 최소 2년 경력을 포함한 최소 3년의 농업분야</u>-----</p> <p>2) -----<u>력 (또는 최소 2년 과정의 동등 수준의 교육) 및</u> -----(<u>물/수</u>)----- ----- -----</p>	<p>o 최신 국제기준을 반영 (심사원 분류 체계, 적격성 판정 기준 명확화)</p>

현행	개정안	비고
<p>2.3 관련 전공이 아니다 하더라도, 인증범위 관련 과목이 수 입증을 통해 학력을 인정할 수 있다. 과목이수는 정규과정이 아니더라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수료 증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p>	<p>3) 정규과정을 통한 전공 입증(예 : 학위수여증 등)--- <u>니더---</u>, ----- 교육 -----.</p>	
<p>3. 기술 및 자격 검사원/심사원은 기술적 능력 및 자격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p> <p>3.1 교육 및 심사 경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원은 검사(inspection)의 1일 검사실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심사원은 ISO 19011에 기반한 경영시스템 관련 선임 심사원 교육을 이수(최소 37시간 이상)하고, 경영시스템(예, ISO 9000, ISO 14000, ISO 22000, OSHAS 18000 등) 또는 BRC 또는 IFS 또는 글로벌갭 옵션2 심사 또는 유럽 유기농 생산자단체 심사에 대한 최소 10일의 심사 경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 심사원은 'GLOBALG.A.P. QMS 심사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p>3.2 식품안전, G.A.P. 교육 이수</p> <p>3.2.1 HACCP 관련 정규 교육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원/심사원 자격 부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교육 과정 이수 - 인증기관에 의한 내부교육 인정가능 <p>3.2.2 식품위생 관련 정규 교육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원/심사원 자격 부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교육 	<p>다. 기술 및 자격 <u>농장심사원/QMS심사원</u>----- -----.</p> <p>1) ----- - <u>농장심사원/QMS심사원</u>은 농장심사----- -----. - <u>QMS 심사원</u>은 ----- ----- ----- 18000, ISO/IEC 45001, BRCGS Food, IFS Food, 기존 GLOBALG.A.P. 옵션2 심사 또는 옵션 4 표준, 유기농 생산자단체 심사 등)----- -----.</p> <p>- <u>QMS 심사원</u>은 ----- -----.</p> <p>2) -----</p> <p>가) ----- - <u>농장심사원/QMS 심사원</u> ----- ----- -----</p> <p>나) ----- - <u>농장심사원/QMS 심사원</u> -----</p>	<p>o 최신 국제기준을 반영 (심사원 분류 체계, 적격성 판정 기준 명확화)</p>

현행	개정안	비고
<p>과정 이수</p> <p>* 화훼 및/또는 작물 번식재 분야의 <u>검사원 및 심사원</u>은 해당되지 않음</p> <p>3.2.3 GLOBALG.A.P. <u>CPC</u> 온라인 교육</p> <p>- GLOBALG.A.P. 온라인 교육 이수 및 합격</p> <p><신설></p> <p>3.3 의사소통능력</p> <p>- 해당 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어 및 전문용어 활용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p> <p><신설></p> <p>3.4 인증기관의 <u>검사원/심사원</u>에 대한 <u>작업수행도</u> 평가</p> <p>- <u>검사원/심사원</u> 신청자는 <u>자격 범위에 대한 검사 및/또는 심사에 대해</u> 최소 1회 이상 <u>참관</u>하여야 한다.</p> <p>- 인증기관은 <u>검사원/심사원</u> 후보자에 대해 <u>자격부여 전</u> 최소 1회 <u>이상</u> <u>입회심사</u>를 실시하여야 한다.</p> <p>3.5 <u>검사원/심사원</u>의 <u>자격</u> 유지</p>	<p>-----</p> <p>* ----- <u>농장심사원 및 심사원</u>-----</p> <p>다) ----- <u>P&C</u> -----</p> <p>-----</p> <p>라) <u>작물보호, 토양관리, 비료 및 IPM 교육이수</u></p> <p>- <u>작물 범위 농장심사원/ QMS 심사원 대상</u></p> <p>- <u>자격의 일부이거나 정규교육 이수</u></p> <p>3) 의사소통능력</p> <p>-----</p> <p>-----.</p> <p>- <u>이 규정에 대한 예외는 GLOBALG.A.P. 사무국과 협의 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u></p> <p>4) ----- <u>농장심사원/QMS 심사원</u>-----</p> <p>- <u>인증기관은 농장심사원 후보자 자격부여 전, 관련 분야에 대해 자격을 부여받은 농장심사원 및 QMS 심사원이 실시하는 옵션 1 심사 또는 옵션 2 생산자 단체에 대해 농장심사원 후보자가 -----관하도록 하-----.</u></p> <p>- ----- <u>QMS심사원</u> -----</p> <p>----- <u>이상 QMS 적용 옵션 1 또는 옵션 2의 입회</u>-----. <u>이 때 농장심사 또는 QMS 심사자는 농장심사의 입회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QMS 심사는 QMS 심사자가 실시하여야 한다.</u></p> <p>5) <u>농장심사원/QMS 심사원</u>-----</p>	

현행	개정안	비고
<p>- 인증기관은 검사원/심사원이 매년 최소 5회 또는 10일의 검사/심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의 고객이 이를 수행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GLOBALG.A.P. 사무국과 서면협의를 할 수 있다.</p> <p>- 인증기관은 검사원/심사원에 대해 최대 4년에 1회씩 역량검증을 위한 입회심사를 수행하여야 한다.</p> <p>3.6 검사원/심사원 순환</p> <p>- 인증기관은 검사원/심사원이 4년 연속으로 한 업체를 검사/심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p> <p><신설></p>	<p>- ----- 농장심사원/QMS 심사원----- 5회의 심사(농장심사원 : 농장, QMS 심사원 : QMS 및 농장)----- . ----- 인증업체 수가 충분하지 않아 본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 협의 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p> <p>- ----- 농장심사원/QMS 심사원----- .</p> <p>6) 농장심사원/QMS심사원 순환</p> <p>- ----- 농장심사원/QMS 심사원----- 심사----- .</p> <p>- 다만, 인증기관이 해당 국가/권역에서 농장심사원/QMS심사원 1인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경우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예외기간은 12개월로 한다.</p>	
<p><신설></p>	<p>2. IFA V6 GFS - Rules for Certification bodies의 14항 관련</p> <p>가. 농장심사원(Farm Auditor)</p> <p>- 인증기관은 농장심사원 자격 승인 전, 해당 심사원 후보자에 대한 최소 3건의 농장심사기술 평가를 하여야 한다. 심사기술평가는 최소 1건의 농장심사 입회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나머지 2건의 평가는 추가 입회평가 또는 서류평가로 실시할 수 있다.</p>	<p>o 최신 국제기준을 반영 (국제식품안전분야 관련 심사원 기준 반영)</p>
<p><신설></p>	<p>나. QMS심사원(QMS Auditor)</p> <p>- 인증기관은 QMS심사원 자격 승인 전, 해당 심사원 후보자에 대해 최소 3건의 QMS심사기술 평가를 하여야 한다. 심사기술평가는 최소 1건의 QMS심사 입회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나머지 2건의 평가는 추가 입회평가 또는 서류평가로 실시할 수 있다.</p>	<p>o 최신 국제기준을 반영 (국제식품안전분야 관련 심사원 기준 반영)</p>
<p><신설></p>	<p>다. 농장심사원/ QMS 심사원 자격 유지</p>	<p>o 최신 국제기준을</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 <u>농장심사원의 자격유지를 위해, 인증기관은 농장심사원이 매년 최소 5건의 농장심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중, 최소 1건은 GFSI 인정 GLOBALG.A.P.에 대한 심사이어야 한다.</u></p> <p>- <u>QMS심사원의 자격유지를 위해, 인증기관은 QMS심사원이 매년 최소 5건의 QMS심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중, 최소 1건은 GFSI 인정 GLOBALG.A.P.에 대한 심사이어야 한다.</u></p>	<p>반영 (국제식품안전분야 관련 심사원 기준 반영)</p>